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설립한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기업 명칭 등)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본교 교지(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로 한다. 다만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거나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및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30.>

명칭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사업종목
할엔터테인먼트 (HAL Entertainment)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영화, 영상물 제작

제3조(학교기업의 사업 내용) 학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종목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학생 현장실습 교육 및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4.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기타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학교기업의 대표)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학교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며 학교기업을 대표한다.

②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교기업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조직)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 및 평가 등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기업 유관 학과 및 학부(전공)는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학교기업 설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접수된 학교기업 설립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는 학교기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학교기업 위원회) ① 본교의 여러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기업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각 학교기업 대표
2. 총장이 임명한 5명 이내의 교내외 인사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기업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기업의 설치 및 폐지
3. 학교기업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기업의 운영규정에 관한 심의
5.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각 학교기업 운영위원회) ① 각 학교기업에는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이하"기업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업별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은 학교기업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학교기업의 명칭 및 관리책임자
2. 학교기업의 원활한 운영
3. 목적 및 사업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재정투자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
8. 시설·설비 및 운영방법
9.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제9조(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학점인정)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직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학교기업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예산 및 회계) ① 학교기업은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에 따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업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

기업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1조(보상금) ① 학교기업의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수혜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배분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학교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직원, 학교기업 직원, 또는 학교기업 소속 학생의 지식재산권은 본교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3조(폐지)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학교기업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재가를 거쳐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산의 귀속)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기관에 귀속한다.

제15조(학교기업에 대한 지원)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통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감사)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감사는 매년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내규 등) 기타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기업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